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3월 20일

군산시 조례 제1711호

군산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의 예술성 함양과 서예교육을 통한 군산시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군산시의 서예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 이라 한다)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따라야 한다. 이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부와 전라북도가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군산시의 서예진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서예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이하“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시장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시장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
 - 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
 -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 5.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와 도지사의 관련 자료 제출요청에 응해야 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3월 20일

군산시 조례 제1712호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와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를 신설한다.

제2조(정의) 2.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을 말한다. 단,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3월 20일

군산시 조례 제1713호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군경합동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안장대상)”을 “(안장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자”를 “「주민등
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당시 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
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가목, 나목에 따른 대상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른 부적격자는 군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제4조제1항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밖”을 “그 밖”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접하여”를 “잇닿아”로 한다.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안장기간) ① 시장은 군경묘지의 안장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제2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당”을 “적정”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하여”를 “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퇴거시킬”을 “나가게 할”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를 “해”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제3조의 안장대상자를 심사하거나 군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요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20년 3월 20일

군산시 조례 제1714호

군산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무심기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나무심기”란 산림, 공원, 도로변 자투리 땅, 국·공유 유휴 토지, 공터 등에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말한다.
- 2. “녹지조성”이란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아름다운 숲과 공원 등의 녹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 3. “나무은행”이란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의 이용가치 향상을 위해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보관·관리하고 필요시 용도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에 필요한 자문,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나무심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군산시 나무심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나무심기 실천전략, 우수사례 발굴 등 정책자문
2. 시민헌수, 헌금 등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전개
3. 나무심기 관련 교육 홍보 프로그램 발굴 보급
4. 시민의 숲 조성 운동 전개
5. 녹지조성 보전 관리 활동
6. 그밖에 나무심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나무심기에 관한 경험·관심이 풍부한 사람
2. 산림·조경·화훼·환경·경관·도시계획·디자인·관광 분야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활동가 등
3. 시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
4. 군산시의회 의원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회의 등 활동에 장기 불참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3. 그밖에 품위 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위원회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④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나무심기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등의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나무심기 운동을 위한 연구조사 및 시민 홍보활동
- 2.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전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 시민의 숲 조성, 시민 헌수 식재 및 관리
- 4. 공공부지, 골목 가꾸기, 마을 가꾸기 등에 대한 나무심기에 관한 사업
- 5. 식재 수목의 보호·등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
-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나무심기 행사 등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게 나무·꽃 등 재료와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지가가 나무를 기증할 경우 이를 나무심기와 녹지조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나무심기에 시민 참여를 위하여 출생·입학·졸업·창사·결혼·회갑·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 등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민간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 공원 또는 도로변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① 시장은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하여 우수한 읍면동과 민간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 활동에 참여한 학생, 시민의 봉사활동을 인정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15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식재된 나무와 녹지 관리를 위해 시민과 민간 단체를 나무 지킴이, 숲 돌보미, 전문봉사단 등으로 위촉하거나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20-650호

공 고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급변하는 지역경제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개정(안 제1조)
- 특례보증 지원대상자 주소 요건 추가(안 제3조)
- 경영안정 지원사업 항목 추가(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30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소상공인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garnetos@korea.kr
- 2)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7층 소상공인지원과
- 3) 팩스 : 063-454-265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전화 : 063-454-26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건전한 육성발전과**”를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 제2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군산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경영안정 지원”**”을 “**“경영안정 지원”**”으로, “**창업·경영개선등**”을 “**창업·경영개선 등**”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을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군산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 2.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인 자**
- ③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제4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소상공인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년**”을 “**연**”으로 한다.

제5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을 “**(경영안정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업장의 수선 등 시설개선 지원

7.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지원

8. 그 밖에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에 대응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종류, 지급기준 등 인센티브 제공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플랫폼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9조로 한다.

제14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5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16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7조를 제13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u>는 <u>군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조례</u>는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에 따라 ----- <u>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u>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소상공인</u>”이란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u>」 <u>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u> 말한다. 2. (생 략) 3. “<u>특례보증</u>”이란 <u>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u>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u>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u> 말한다. 4. · 5. (생 략) 6. “<u>경영안정지원</u>”이란 <u>소상공인의 <u>창업·경영개선등</u>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u> 말한다. 	<p>제2조(정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u>제2조</u>-----. 2. (현행과 같음) 3. ----- ----- <u>군산시</u>-----. 4. · 5. (현행과 같음) 6. “<u>경영안정 지원</u>” ----- ----- <u>창업·경영개선 등</u> -----.

7. (생략)

제3조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② (생략)

<신설>

③ (생략)

제4조 (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로 다음 각 호에

7. (현행과 같음)

제3조 (특례보증 지원) ① -----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

-----.

1. 군산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2. 신용등급이 3등급 이하인 자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삭제>

<삭제>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제6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신용보증재단에서 제한하는 재보증제한업종
- 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3.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라북도 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은 년 1.7%를 초과하는 이자율에 한하고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른다.

<삭 제>

제4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

-----.

② ----- 연 -----

-----.

③·④ (생략)

제8조(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시장은 제1항 각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경영안정 지원)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사업장의 수선 등 시설개선 지원

7.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지원

8. 그 밖에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에 대응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 각호 -----

-----.

③ 제1항제7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종류, 지급기준 등 인센티브 제공과 그 밖에 운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

증기관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자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 2. 국가 및 전라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은 경우
- 3.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4.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 제16조 (생략)

제17조 (생략)

영에 필요한 사항을 플랫폼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제6조 ~ 제12조 (현행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제13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20-651호

공 고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차보전금 지급절차에 관한 조문 개정(안 제3조)
- 이차보전금 지원중지에 관한 조문 개정(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3월 30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소상공인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garnetos@korea.kr
- 2)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7층 소상공인지원과
- 3) 팩스 : 063-454-265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전화 : 063-454-268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이차보전 지원신청 절차)”를 “(이차보전금 지급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3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4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주소 또는 사업장을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거나 폐업 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6조 중 “용자”를 “특례보증 용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이차보전 지원신청 절차)</p> <p>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1. <u>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u></p> <p>2. <u>사업자등록증 사본</u></p> <p>3. <u>그 밖의 군산시에서 정하는 서류</u></p> <p>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지원여부는 금융기관의 결정통보에 따라 결정된다.</p> <p>③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u>별지 제2호서식</u>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시장은 <u>제3항</u>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취급 금융기</p>	<p>제3조(<u>이차보전금 지급 절차</u>) <삭제></p> <p><삭 제></p> <p>① ----- ----- ----- <u>별지 제1호 서식</u> ----- -----.</p> <p>② ----- <u>제1항</u>----- ----- ----- -----</p>

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체결)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3. (생략)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및 폐업 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

②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6조(변경사항 통보) 용자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체결) --- 제4조제4항

-----.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 1. 주소 또는 사업장을 군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거나 폐업 하였을 때
- 2.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6조(변경사항 통보) 특례보증
용자-----

-----.

군산시 공고 제2020-656호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3월 2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출생등록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을 원활하게 하고 인구 늘리기 정책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나. 개정 내용

-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중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을 “지원대상은”으로 수정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한다”를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로 수정

-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를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전”으로 수정
 “읍면동장에”를 “읍·면·동장에게”로 수정
 같은 항 단서 삭제

3. 의견 제출

본 조례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03월 31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건강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1) 전자우편(이메일) : ndylove1@korea.kr
- 2) 주소 :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시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3) 팩스 : 063-468-4763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건강관리과(전화 : 063-460-326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 건강관리비”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등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란 산모와 그 배우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한 산모로서,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에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지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지원금액) 산후 건강관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 시 마다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00만원
2. 그 외 대상자는 50만원

제5조(중복지원) ①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해산급여와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예금통장 사본

제7조(지원여부결정)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에 의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보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지원절차)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일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산모의 예금통장에 계좌입금 하여야 한다. 단, 계좌압류 등으로 산모가 지정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후 그 사람의 예금통장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① 소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지원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 제 영 향 분 석 서

1.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군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과장 백종현, 계장 김은영, 주무관 남다영							
4. 근거법령명등	「모자보건법」 제1조, 제3조		관 련 규제수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자							
6. 규제존속 기한	○ 조례 존속일까지 -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속 적용하여야 함으로 기간 설정 곤란							
7. 종전규제 및 신 설 (강 화) 규제의 내용	《종전규제》 ○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자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로 제한							
	《신설규제》 ○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출생일 이전 군산시 주민등록 기간 및 신생아의 군산시 출생등록 규정, 신생아의 출생일로 부터 12개월 이전으로 신청기간 제한 -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자의 군산시 주민등록기간 규정 : 1년 이상 거주 - 신생아의 출생등록 규정 : 군산시 - 지원신청기간 제한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전							
8. 규제체계도	○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문제의 정의 및 발생원인

-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타시군구에 한 후 출산지원금이 높은 곳에서 출산 지원금을 수령하고 군산시의 산후건강관리비 지원금을 받는 이중수급의 문제발생 및 기존사업의 목적인 지자체 인구 늘리기 취지와 불일치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출생등록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을 원활하게 하고 인구늘리기 및 저출산 극복 정책에 기여

2. 규제목적의 실현 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해당없음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군산시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여
- 산모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육아 가능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해당없음

나.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해당없음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해당없음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대상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산후건강관리 지원 목적인 지자체 인구 늘리기 및 저출산 극복 정책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산모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으로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행복한 출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음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 해당없음

5. 경쟁 제한 여부

가. 시장경쟁 제한 여부 : 해당없음

나. 기업활동 저해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인구감소 및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산후 건강관리 비용 요구가 많음
- 시비 100% 재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며 군산시의 인구늘리기 및 저출산 극복 정책사업이므로 출생일 이전 군산시 주민등록 기간 및 신생아의 군산시 출생등록 제한은 적절한 규제임
- 관련 조례에 따라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전으로 신청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한 규제임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 법적근거
 - 「모자보건법」 제1조, 제3조
- 존속기한의 타당성 :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속 적용하여야 함으로 기간 설정 곤란

7. 규제집행의 적정성

-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타시군구에 한 후 출산지원금이 높은 곳에서 출산 지원금을 수령하고 군산시의 산후건강관리비 지원금을 받는 이중수급의 문제발생 및 기존사업의 목적인 지자체 인구 늘리기 취지와 불일치
-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출생등록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을 원활하게 하고 인구늘리기 및 저출산 극복 정책에 기여

8.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9.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절차 등의 적정성

군산시 고시 제2020-44호

송창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송창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20일

군 산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나. 명 칭 : 송창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군산시장
- 나.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

3. 사업시행위치, 규모, 총사업비

- 가. 위 치 : 군산시 송창동 2-1번지 일원
- 나. 사업규모
 - 지장가옥 철거 19동, 콘크리트포장 60㎡
 - U형개거 L=299m, 배수관(D400 ~ D600) L=208m
 - 마운딩 95m 및 조경식재 1식
- 다. 총사업비 : 3,540백만원

4. 사업기간 : 2019. 1. ~ 2021. 12.

5. 실시설계도서(설계예산서포함) :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비치

6.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 해당없음

7. 사업효과 분석

- 토사유실 및 축대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하여 배수로 및 사면정비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사전예방

8.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9년	'20년 계획	'21년 이후	비고
사업내용	· 용지보상 · 건축물보상 · 가옥철거 · 사면정비	· 건축물보상 · 용지보상	· 건축물및용지보상 · 가옥철거 · 사면정비	· 사면정비 · 사업마무리	
총 사업비	3,540	1,340	2,200		
· 국 비	1,770	670	1,100		
· 지방비	1,770	670	1,100		

9.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공사 완료 후 전문가들과 함께 재해위험도를 평가하여 급경사지의 등급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을 해제토록 하고자 함
- 해당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2회(해빙기, 우기)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10.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참고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063-454-38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토지 및 지장물조서 1부.

▣ 편입토지·물건조서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

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 번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송창동	2-1	대	34.0	34.0	박화* 외 5인	군산시 옥도면 야 미도3길 3-6				
2	송창동	2-2	대	9.0	9.0	군산시					
3	송창동	2-3	대	26.0	26.0	박화* 외 5인	군산시 옥도면 야 미도3길 3-6				
4	송창동	2-4	도로	14.0	14.0	군산시					
5	송창동	3-1	대	35.0	35.0	군산시 외 1인					기재부
6	송창동	3-8	대	123.0	123.0	군산시					
7	송창동	3-9	대	71.0	71.0	군산시					
8	송창동	3-10	대	202.0	202.0	군산시					
9	송창동	3-11	대	43.0	43.0	문대*	군산시 송창동 3-11				
10	송창동	3-12	대	16.0	16.0	군산시					
11	송창동	3-13	전	80.0	80.0	군산시 외 1인					기재부
12	송창동	3-14	대	208.0	208.0	군산시					
13	송창동	3-16	대	342.0	342.0	군산시					
14	송창동	3-17	대	50.0	50.0	군산시					
15	송창동	3-18	대	142.0	142.0	군산시					
16	송창동	3-19	대	106.0	106.0	군산시 외 1인					기재부
17	송창동	3-20	대	99.0	99.0	군산시					
18	송창동	3-21	전	230.0	230.0	군산시					
19	송창동	3-29	대	221.0	221.0	군산시					
20	송창동	3-30	대	179.0	179.0	군산시					
21	송창동	3-42	대	106.0	106.0	군산시					
22	송창동	3-43	대	260.0	260.0	군산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내용	
23	송창동	3-44	전	118.0	118.0	국 (기획재정부)					
24	송창동	3-45	대	33.0	33.0	김영* 외 7인	군산시 송창동 3				
25	송창동	3-46	대	73.0	73.0	군산시					
26	송창동	3-47	대	33.0	33.0	군산시					
27	송창동	3-48	대	241.0	241.0	군산시					
28	송창동	3-50	대	73.0	73.0	군산시 외 1인					기재부
29	송창동	3-51	전	33.0	33.0	국 (기획재정부)					
30	송창동	3-52	대	102.0	102.0	군산시					
31	송창동	3-53	대	30.0	30.0	군산시					
32	송창동	3-54	대	155.0	155.0	군산시					
33	송창동	3-55	대	96.0	96.0	군산시					
34	송창동	3-56	대	50.0	50.0	김삼* 외 2인	서울특별시 용산 구 대사관로34다 길 53(한남동)				
35	송창동	3-57	대	139.0	139.0	김영* 외 1인	군산시 송창동 3				
36	송창동	3-58	대	53.0	53.0	김영* 외 7인	군산시 송창동 3				
37	송창동	3-59	대	10.0	10.0	김영* 외 7인	군산시 송창동 3				
38	송창동	3-64	대	179.0	179.0	군산시					
39	송창동	3-65	대	53.2	53.2	군산시					
40	송창동	3-66	대	122.0	122.0	군산시					
41	송창동	3-67	대	190.8	190.8	군산시					
42	송창동	3-68	대	301.0	301.0	군산시					
43	송창동	3-69	전	50.0	50.0	군산시					
44	송창동	3-72	대	132.0	132.0	군산시					
45	송창동	3-74	대	132.0	132.0	군산시					
46	송창동	3-76	대	99.0	99.0	군산시					
47	송창동	3-77	대	333.0	333.0	군산시					
48	송창동	3-79	대	302.0	302.0	군산시					
49	송창동	3-80	대	440.4	440.4	군산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50	송창동	3-81	대	50.0	50.0	군산시					
51	송창동	3-86	대	136.0	136.0	군산시					
52	송창동	3-87	대	122.0	122.0	군산시					
53	송창동	3-88	대	127.1	127.1	군산시					
54	송창동	3-89	대	149.0	149.0	군산시					
55	송창동	3-90	대	202.0	202.0	군산시					
56	송창동	3-91	대	142.0	142.0	군산시					
57	송창동	3-92	대	149.0	149.0	군산시					
58	송창동	3-93	대	27.7	27.7	군산시					
59	송창동	3-94	전	390.0	390.0	군산시					
60	송창동	3-97	도로	13.0	13.0	군산시					
61	송창동	3-104	대	116.0	116.0	군산시					
62	송창동	3-105	대	43.0	43.0	위성*	익산시 인화동 1가 72-36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근저당	
63	송창동	3-107	대	106.0	106.0	군산시					
64	송창동	3-108	대	66.0	66.0	군산시					
65	송창동	3-109	대	499.3	264.6	군산시					
66	송창동	3-112	대	93.0	93.0	군산시					
67	송창동	3-113	대	109.0	109.0	군산시					
68	송창동	3-114	대	102.0	102.0	군산시					
69	송창동	3-116	대	236.7	236.7	군산시					
70	송창동	3-117	대	139.0	139.0	군산시					
71	송창동	3-118	도로	7.0	7.0	군산시					
72	송창동	3-119	도로	3.0	3.0	군산시					
73	송창동	3-120	도로	7.0	7.0	군산시					
74	송창동	3-121	도로	13.0	13.0	군산시					
75	송창동	3-158	전	8.0	8.0	국 (기획재정부)					
76	송창동	3-161	도로	28.0	28.0	군산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77	송창동	3-170	대	216.0	216.0	군산시					
78	송창동	3-175	전	202.0	202.0	군산시					
79	송창동	3-177	대	127.0	127.0	군산시					
80	송창동	3-178	도로	7.0	7.0	군산시					
81	송창동	3-192	대	32.0	32.0	군산시 외 1인					기재부
82	송창동	3-193	대	46.0	46.0	군산시 외 1인					기재부
83	송창동	3-194	대	29.0	29.0	군산시 외 1인					기재부
84	송창동	3-195	대	1.0	1.0	군산시 외 1인					기재부
85	송창동	3-196	대	34.0	34.0	군산시					
86	송창동	3-197	전	119.0	119.0	군산시 외 1인					기재부
87	송창동	3-198	전	5.0	5.0	군산시 외 1인					기재부
88	송창동	3-199	대	5.0	5.0	군산시					
89	송창동	3-200	대	185.1	185.1	군산시					
90	송창동	3-201	도로	19.0	19.0	군산시					
91	송창동	3-203	전	4.0	4.0	군산시 외 1인					기재부
92	송창동	3-206	대	65.3	65.3	군산시					
93	명산동	22-12	대	55.7	55.7	군산시					

2)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조서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1	송창동	2-1	가옥	블록, 스투트	89㎡	박화*	군산시 옥도면 야 미도3길 5-6	
			개장	목재, 함석	6㎡			
			담장	블록(H=1.5m)	3m			
			대문	함석	1식			
2	송창동	3-1	컨테이너		1식	자율방법 대	군산시 송창동 3-1	
3	송창동	3-10	가옥	조적, 슬라브	60㎡	안경*	군산시 송창동 3-10	
			담장	블록(H=1.5m)	1m			
			대문	철재	1식			
			계단	콘크리트	1식			
4	송창동	3-11 3-12	가옥	블록,스레트	29㎡	문대*	군산시 송창동 3-12	
			가옥	블록,함석	31㎡			
			담장	블록(H=2.0m)	15m			
			대문	철재	2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1식			
5	송창동	3-14	컨테이너		1식	군산시		
6	송창동	3-20	가옥	콘크리트, 슬라브	120㎡	군산시		
			창고	판넬, 함석	22㎡			
			보일러실	조적, 함석	6㎡			
			수목	1	식			
7	송창동	3-42	가옥	조적, 기와	69㎡	군산시		
			창고	블록, 슬라브	10㎡			
			담장	블록	5m			
			대문		1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1식			
8	송창동	3-43	가옥	블록, 스투트	32㎡	군산시		
			담장	헨스	25m			
			대문	철재	1식			
			감나무		6주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9	송창동	3-54	가옥	콘크리트, 슬라브	102㎡	군산시		
			담장	조적(H=1.5m)	28m			
			대문	철재	1식			
			감나무		1주			
			사철나무		1주			
			관상수		1주			
10	송창동	3-57	가옥	블록, 스투트	72㎡	김영*	군산시 송창동 3	
			창고	블록, 스투트	13㎡			
			가추	스레트	15㎡			
			담장	블록(H=2.0m)	15m			
			대문	철재	1식			
			벚나무		1주			
11	송창동	3-65	가옥	블록, 스투트	37㎡	군산시		
			담장	블록	10m			
			대문	목재	1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1식			
12	송창동	3-72	가옥	블록, 스투트	73㎡	군산시		
			화장실	블록, 스투트	3㎡			
			담장	블록(H=1.5m)	26m			
			대문	철재	1식			
			사철나무		1식			
			감나무		1주			
			관상수		3주			
13	송창동	3-79	공중화장실	콘크리트, 슬라브	32㎡	군산시		
			벚나무		4주			
			철쭉		1식			

순번	위치	지번	편입물건	구 조	수량 및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 소	
14	송창동	3-90	경로당	콘크리트, 슬라브	43㎡	명 성 경로당		
			창고	콘크리트, 슬라브	7㎡			
			담장	조적	34m			
			대문	철재	1식			
			컨테이너		1식			
15	송창동	3-92	컨테이너		1식	비상 급수시설		
			식수대		1식			
			안내판		2개			
16	송창동	3-105	가옥	조적, 슬라브	64㎡	위성*	익산시 인화동1가 72-36	
			담장	블록(H=1.0m)	24m			
17	송창동	3-109	가옥	콘크리트, 슬라브	67㎡	군산시		
			창고	조적, 스투트	20㎡			
			보일러실	조적슬라브	4㎡			
			견사	목조스레트	1식			
			담장	조적(H=1.5m)	13m			
			대문	철재	1식			
			계단	콘크리트	1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1식			
			무화과나무		5주			
18	송창동	3-114	가옥	블록, 함석	103.5㎡	군산시		
			개장	웬스, 함석	17㎡			
			대문	목재	1식			
19	명산동	22-12	가옥	블록, 스투트	66㎡	군산시		
			창고	블록, 스투트	9㎡			
			화장실	블록, 스투트	7㎡			
			담장	블록	29m			
			대문	철재	1식			
			강나무		1주			
			장미		1주			
			관상수		1주			

군산시 공고 제2020 - 622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9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지곡동 324-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2-9호선)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20년 3월 일

-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 3.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324-4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대로2-9호선 도로확장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대로2-9 : L=470m, B=30m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5. 12. 30.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063-454-3523, 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나운동	177-1	도	1,245	323	군산시					
2	"	산217	도	99	5	군산시					
3	"	산216-4	임	74	3	국(기획재정부)					
4	"	산216-5	임	1,022	1,003	국(기획재정부)					
5	"	184-2	전	636	63	한국농어촌공 사					
6	"	184-6	전	356	356	군산시					
7	"	산223-5	임	463	25	유*자	부산시 남구 민락동 30-1, 107호				
8	"	산223-6	임	1,262	1,011	군산시					
9	"	산227-5	묘	1,126	315	군산시					
10	"	산224-4	임	3,743	3,443	군산시					
11	"	191-46	임	703	175	군산시					
12	"	192-1	전	393	27	군산시					
13	"	192-2	전	460	66	군산시					
14	"	192-3	전	60	45	군산시					
15	"	191-35	묘	159	4	군산시					
16	"	1495	도	572	418	국(농수산부)					
17	"	191-12	전	1,788	382	군산시					
18	"	191-16	전	526	13	군산시					
19	"	191-14	전	296	168	군산시					
20	"	191-42	전	259	134	군산시					
21	"	191-41	전	394	394	군산시					
22	"	산216-3	도	1,568	896	국(기획재정부)					
23	"	산216-2	도	298	236	국(기획재정부)					
24	"	174-25	임	201	76	국(기획재정부)					
25	"	산223-7	임	418	290	유*자	부산시 남구 민락동 30-1, 107호				
26	"	1517-4	도	21	21	군산시					
27	"	1517-5	도	267	267	군산시					
28	"	1517-6	도	168	152	재단법인**교 대한감리회유 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4-8	**농업 협동조 합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 1265(용암동)	근저당	
29	"	1517-9	임	840	689	재단법인**교 대한감리회유 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4-8				
30	군산시 지곡동	484	도	883	741	국(농수산부)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31	"	324-28	임	93	93	김*은	전북 군산시 중앙로33-3, 104동 702호(대명동, 아이플러스시 티)	주식회 사*은*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근저당, 지상권	
32	"	324-37	임	242	242	군산시					
33	"	324-14	대	109	2	김*남	전북 군산시 서수면 상장곶윗길 119	주식회 사*은*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근저당, 지상권	
34	"	324-15	대	263	7	김*남	전북 군산시 서수면 상장곶윗길 119	주식회 사*은*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근저당, 지상권	
35	"	324-36	대	58	53	군산시					
36	"	324-35	전	788	788	군산시					
37	"	324-4	전	253	104	김*남	전북 군산시 서수면 상장곶윗길 119	주식회 사*은*행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금암동)	근저당, 지상권	
38	"	324-21	도	308	98	군산시					
39	"	328-7	전	155	155	군산시					
40	"	329-2	전	86	86	군산시					

군산시 공고 제2020 - 630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76호선의외 5)사업 실시계획인가 전 열람공고

군산시 신평동 892-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76호선의외 5)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이 작성·제출되어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 산 시 장
2020년 3월 일

- 1. 열람 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 2. 열람 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 3. 사업의 개요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신평동 892-6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명 칭 : 소로3-76호선의외 5개소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중로3-1 : L=5m, B=6m 2) 소로3-76 : L=65m, B=6m
 - 3) 소로2-65 : L=2m, B=6m 4) 소로3-78 : L=3.5m, B=6m
 - 5) 소로3-77 : L=81m, B=6m 6) 소로2-64 : L=2.8m, B=6m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고
- 4.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063-454-3523, 3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중로3-1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신평동	892-6	도	932.0	36.2	국(건설부)					
2	"	894-2	도	145.0	10.1	국(기획재정부)					
3	"	892-39	전	104.0	4.0	이*구	군산시 신평동 892-39				
4	"	892-180	대	69.0	31.6	군산시					지분 31/99
						국(기획재정부)					지분 68/99
계				1,250	81.9						

※ 소로3-76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신평동	892-39	전	104.0	0.6	이*구	군산시 신평동 892-39				
2	"	892-180	대	69.0	30.8	군산시					지분 31/99
						국(기획재정부)					지분 68/99
3	"	892-178	전	24.0	24.0	군산시					
4	"	911-15	전	19.0	19.0	하*수	군산시 신평동 911-2				지분 18/456
						국(기획재정부)					지분 438/456
5	"	911-19	대	180.0	180.0	국(기획재정부)					지분 422/570
						김*채	군산시 신평동 911-7				지분 67/570
						김*현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50, 911호(부평동, 유진마젤란주상복합 오피스텔)				지분 35/570
						군산시				지분 46/570	
6	"	911-22	대	17.0	17.0	군산시					
7	"	995-1	도	1.0	1.0	국(건설부)					
8	"	912-4	대	120.0	120.0	군산시					
9	"	914-25	대	20.0	20.0	군산시					
10	"	914-32	대	109.0	47.3	군산시					
11	"	914-30	대	118.0	15.2	군산시					
12	"	914-27	대	72.0	6.1	군산시					
계				853	481						

※ 소로2-65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신평동	914-32	대	109.0	13.7	군산시	군산시				
2	"	914-30	대	118.0	8.7	군산시	군산시				
3	"	914-27	대	72.0	7.2	군산시	군산시				
계				299	29.6						

※ 소로3-78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송풍동	921-136	도	40.0	8.2	군산시					
2	"	921-165	대	110.0	0.7	군산시					
계				150	8.9						

※ 소로3-77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송풍동	921-136	도	40.0	3.8	군산시					
2	"	921-165	대	110.0	109.3	군산시					
3	"	918-2	대	350.0	334.3	군산시					
4	"	921-7	전	182.0	48.3	군산시					
5	"	921-124	대	139.0	2.8	이*자	군산시 신평2길 7 (송풍동)	동군산새 마을 금고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26-30	근저당	
								주식회사 이새에프 앤씨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136, 10층, 11층(원남동, 보령빌딩)	근저당	
6	"	916-11	대	10.0	0.7	군산시					
7	"	916-10	전	95.0	12.0	군산시					
계				926	511.2						

※ 소로2-64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송풍동	921-135	대	19.0	1.2	군산시					
2	"	916-11	대	10.0	1.1	군산시					
3	"	916-10	전	95.0	16.8	군산시					
4	"	921-7	전	182.0	26.8	군산시					
계				306	45.9						

○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 중로3-1, 소로3-76, 소로2-65

일련 번호	물건의 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읍면동	지번			개소	단위	주소	성명	
1	신평동	912-1	가옥		1	동	군산시 오룡재안길 25	전*웅	
2		911-8	가옥		2	동	군산시 문화동 2-15	송*성	
3		911-19	가옥		1	동	군산시 신평동 911-19	김*채, 기획재정부, 군산시, 김*현	
4		914-32	빗물받이	0.5X0.4	1	개		군산시	
5		914-30	빗물받이	0.5X0.4	1	개		군산시	
6		911-19	집수정	0.5X0.5	1	개	군산시 신평동 911-19	김*우	
7		911-19	집수정	0.5X0.5	1	개	군산시 신평동 911-19	김*우	
8		914-32	가로등		1	개소		군산시	
9		911-19	가로등		1	개소		군산시	
10		892-6	가드레일	21m	1	개소		국토교통부	
11		892-180	나무	R2.5	11	주		군산시	
12		912-4	체신주	52m	1	주		KT	
13		912-4	한전주		1	주		한국전력공사	
14		914-32	한전주		1	주		한국전력공사	
15		894-2	한전주		1	주		한국전력공사	

※ 소로3-78, 소로3-77, 소로2-64

일련 번호	물건의 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비고
	읍면동	지번			개소	단위	주소	성명	
1	송풍동	921-1	대		3	동	군산시 송풍동 921-1	김*순	
2		921-7	도		1	동		군산시	
3		956-6	도		1	동		군산시	
4		921-7	도	0.8X0.8	1	동		군산시	
5		921-7	대	0.5X0.4	1	동		군산시	
6		918-2	대	0.3X0.3	1	동		군산시	
7		921-7	대	10	1	주	군산시 송풍동 918	문*례	
8		918-2	대	5	1	주	군산시 중동 270-6	강*한	
9		921-136	도	52m	1	주		KT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0-1호

공공하수도(가산지구 마을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군산시 공공하수도(가산지구 마을하수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0일

군 산 시 장

1. 사용개시일자 : 2020년 3월 20일

2. 사용개시 공공하수도 내역

구 분	내 용		비 고
명 칭	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 치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748		
처리구역 면적	0.930km ²		
하수처리 구역	읍내, 광월, 신덕, 개정, 원이곡, 수왕, 가산, 신기, 우포, 서군산산업단지, 예비군훈련장		
하수처리 용량	330m ³ /일		
하수처리 방식	고도하수처리 방식		
하수배제 방식	분류식		
방 류 수 역	만경강 수계		
설계 수질 (방류)	BOD	4.8mg/ℓ	
	COD	11.8mg/ℓ	
	SS	4.9mg/ℓ	
	T-N	10.9mg/ℓ	
	T-P	1.09mg/ℓ	

3. 관계도면을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하수과(☎063-454-5474)에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